

정 관

식 당 운 영 회 칙



광 진 소 방 서

제1조(명 칭) 본 위원회는 “광진소방서 식당운영위원회”라 한다.

(이하, 운영위원회라 한다)

제2조(목 적)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은 광진소방서 구내식당을

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영양 및 위생관리 그리고 건강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향상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소 속)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진소방서에 둔다.

제4조(구 성)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정하고 위원장 1인, 위원 7인, 간사 1인, 서기 2인으로 구성한다

-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소집 권한이 있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제반 입출금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 감사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
-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5조(자 격) 위원장 등 자격은 다음과 같다

- ① 위원장은 광진소방서 “소방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소방행정과 행정팀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장비회계팀장, 대응총괄팀장, 예방팀장, 지휘팀장, 진압대장, 구조대장, 현장대응단 식당운영 등 7인으로 한다.

식당 운영 방침

④ 서기는 소방행정과 안전계획, 대응단 서무로 한다.

제6조(정기 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1월에 실시한다.

제7조(정기 회의)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운영위원회 운영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정기회의 개최 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분기별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개선방안을 논의 의결하며, 감사위원은 영양사로부터 분기중 운영금 입출금내역 및 관련 통장 전부를 제출받아 적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③ 기타 현안문제 발생 시 상호 논의 의결한다.

제8조(임시 회의) ①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 8인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.

② 임시회의에서는 소집 시의 시급한 당면과제를 논의 의결한다.

제9조(의 결) 본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 정족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운영 관계) 본 위원회의 운영은 각 부 운영방침 내에서 운용됨을 원칙으로 한다.

□ 부 칙

1. 본 운영회칙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/3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2. 본 정관은 2023. 7. 12.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조(목 적) 본 식당은 직원들의 영양 및 건강에 맞는 식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 방침) 본 식당은 광진소방서 직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운영하고자 한다.

제3조(운영 수입금) ① 광진소방서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운영비의 입·출금을 관리한다. 식당 이용자 수입(직원)은 각 과 및 현장대응단에서 식비 담당 직원 1인을 지정하여 식대를 각출(취합)하고, 20일 이전 식당 관리 계좌(법인통장)에 입금하도록 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예산(본부 식당운영관련 배정예산은 현장대응단, 각 부서별 식비 각출 예산은 행정팀에서) 운용 및 집행한다.

※ 신한은행 100-036-588018 광진소방서(구내식당 입출금 통장)

1. 내근직원은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일근 20식 기준, 당직하지 않는 내근직원 월 85,000원(20식×4,250원), 당직하는 내근직원 월 97,000원(20식×4,850원)
2. 외근직원은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당비비 기준 30식 기준 월 120,000원(30식×4,000원)
3. 공무원 시설 기계원은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일근 10일 야간 10일 30식 기준 월 120,000원(30식×4,000원)
4. 공무원 시설청소원은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일근 20일 기준 월 97,000원(20식×4,850원)

- 5. 영양사, 식당조리원, 사회복지요원 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6. 식사를 받지 않아 결식하면 이를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가·병가·교육 등 14일 이상을 결식할 때는 식대를 날짜로 계산하여 환불한다.

※ 교육·연가·병가·공가 등 결원 자 식비 환급금액 기준- 내근기준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일수 | 2주 | 3주 | 4주 | 5주 | 그 이상 |
| 환불금액 | 35,000 | 52,500 | 70,000 | 87,500 | 전액 환급 |

- ②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급식지원비와 관련하여 식대료 인상·인하 등의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식당 종사자와 직원의 복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.

제4조(매식 관계) 직원의 매식 관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(정원 외 식사) 내부 직원에게도 매식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현금(2,500원)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, 그 대금은 운영 수익금으로 환속 이용토록 한다.
(단, 직원 식대 인상 시 위 매식비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.)
- ② (출동대원 식사) 13:00 이전 귀소 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식당에서는 보온 조치를 한다.

제5조 (식당 종사자) 종사자의 급여 및 채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(종사자 급여) 식당조리원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 또는 종사자 (종사 예정자) 간의 합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소방서 주변 일반 음식점과 지나친 낮은 차액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.

- 1.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시급 반영한다.
- 2. 퇴직금: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식 [1일 평균임금×30(일)×(재직일 수÷365일)]에 의하여 계산, 퇴직금 통장 별도 적립, 계약종료 시 지급
- 3. 4대 보험: 금 580,000원(예상, 매월 변동)
- 4. 명절 상여금: 설·추석 각 200,000원 지급, 명절 전일·당일·후일(3일) 명절 휴가 실시
- 5. 연가유급휴가: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연가 12일 부여(매년 1월1일 기준) 연가보상은 최대 5일(1일5만원)을 보상한다
※ 휴가자 발생 근무 시간조정(무급)
- 6. 국민연금(50%) 그 외는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은 100%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② (종사자 채용) 종사자 채용은 다음과 같다
 - 1. 계약서 작성
 - 가. 고용자는 식당 이용 전 직원으로 하며, 대표자를 광진 소방서 식당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 - 나. 피고용자는 식당 업무 종사자로 한다.
 - 2. 고용인원은 3명 계약직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년 1월 급여일 기준으로 계약을 갱신하고, 재고용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최초 계약 후 1년 미경과 자에 대해서도 매년 1월 급여일 기준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한다.
 - 3. 종사자 1일 2인 근무를 한다.

| 구분 | | 근로 및 휴게시간 | 1일 근로 시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조식, 중식 업무시간 (A조) | 근로시간 | 05:00 ~ 14:00(8시간00분) | 8시간 (휴게시간 제외) |
| | 휴게시간 | 08:00 ~ 08:30(30분) 13:00 ~ 13:30(30분) | |
| 중식, 석식 업무시간 (B조) | 근로시간 | 10:00 ~ 19:00(9시간00분) | 8시간 (휴게시간 제외) |
| | 휴게시간 | 13:00 ~ 13:30(30분) 18:00 ~ 18:30(30분) | |

③ (종사자 퇴직 등) 종사자 퇴직, 면직, 병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

1. (중도 퇴직자의 급여 지급) 해당 월의 만기일 수에서 근무 일수 비율을 적용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, 초과근무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.
2. (면직)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한 면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수리
3. (병가) 종사자 병가 사용은 다음과 같다
 - 가. 식당 운영회는 식당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.
 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식당 근로자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병가 일수를 식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60일 이내로 허용할 수 있다.
 - 다. 가목에 따라 식당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라. 병가 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 - 마. 가목에 따른 병가 사용 시 식당 운영(식당 근로자의 근무)은 처음 병가 신청 후 2주간은 나머지 식당 근로자

2인이 근무하고, 2주 후에는 병가 신청 식당 근로자의 근무일에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여 기존 근무자 1인과 같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바. 마목에도 불구하고 병가자 외 나머지 식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식당 근무를 나머지 식당 근로자가 병가자의 근무일을 대체할 수 있다.
- 사. 마목에 관련하여 병가자 근무일에 대체 근무하는 식당 근로자에게는 식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(조리실장) 조리실장을 지정하여 영양사 업무 보조 및 식당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.

- 가.업무범위: 식단구성, 식자재 검수, 조리계획, 결원발생 시 대체직원 구인 등 영양사업무 보조
- 나.선발기준: 광진소방서 조리업무 15년 이상 이며 연장자로서 조리실력이 우수한자
- 다. 수당: 월 5만원으로 정한다

제6조(지출 관계) 본 식당의 운영비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① 식당 관리담당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제3조 운영수익금에 의한 정기적 거출액 외는 추가로 거출 할 수 없다
- ②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

그 사안의 사정에 의거 지출하고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.

- 제7조(운영 관계)** ① 영양사는 식당의 제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아울러 금전적 또는 인사적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식당 조리원의 인사를 위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.
- ② 영양사는 적절한 식단의 제공과 아울러 고용된 직원의 통솔 및 식당의 위생을 책임진다.
- ③ 고용된 조리원은 맛있고 영양있는 식사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일터인 만큼 직원에 준하는 제반 규율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.
- ④ 식단의 적정함을 기하기 위하여 주1회에 한하여 조리원 전체의 의견을 나누는 구두회의를 가질 수 있다.
- ⑤ 영양사는 취합한 의견의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익일 식단을 작성하여 식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.
- ⑥ 식당 운영금의 추가적 보조는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, 만일의 경우 시장물가의 급변한 상황으로 인하여 재정적 적손의 사항 발생 시 영양사는 이를 신속히 위원장에게 보고, 그 결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 또한, 운영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타 행정 및 장비의 지원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위생 관계)** ① 식당종사자는 식당 및 주방의 위생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, 식사 전후 6회 이상 살균소독을 한다.
- ② 본 식당의 조리도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살균 소독한다.
- ③ 본 식당의 내·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, 분리수거 및 쓰레기

정리, 음식물쓰레기처리·잔반처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.

- ④ 영양사는 매일 1회 이상 식당종사자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.

제9조(결산 관계) ① 매월 19일 기준 결산하여 매월 25일 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- ② 본 식당의 결산기일은 매년 1월1일 ~ 12월31일(1년간)로 하고 영양사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□ 부 칙

1. 본 운영방침은 정관이 갖는 효력을 동시에 승계받는다.
2. 본 운영방침의 개정은 정관이 갖는 그 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다.
3. 본 운영방침은 2024. 1. 18.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광진소방서